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49
----------	-----

2025. 4. 30.(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현문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현문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충청북도의 책임 및 도민의 의무와 함께 건강관리 정책 추진 방향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건강정책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의료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건강정책 수립·시행 관련 도민 등의 의견수렴 사항(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초고령사회 진입, ‘100세 시대’의 도래 등은 급격한 의료기술과 의약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건강관리’ 즉, 건강에 유익한 행위의 지속적 수행을 통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구현하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확히 담고 있음
- 그러나,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기대수명²⁾은 82.7세인데 반해, 건강수명³⁾은 70.4세로 기대수명과 약 12년의 격차가 존재하고,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 하는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의 질’과 이에 대한 인식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2) 기대수명 :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3) 건강수명 :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함.

-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02년부터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 제5차 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으로 수립·시행되면서,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의 대안으로 사전적 예방과 적극적 관리, 건강환경 조성과 함께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금연·절주 등 건강 규제정책 강화 등 국가 차원에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맞는 정책 추진 기본틀을 마련하게 됨
- 이러한 정부의 사전적 예방과 건강관리 및 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은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 등에 따른 정부의 의료정책에 발맞춰 충청도민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참여와 지자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책무 등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 및 의무와 충청북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본 조례안에서는 '건강' 을 '질병이 없는 상태를 포함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로 정하고, '건강권' 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권' 으로 명시하였으며, '도민건강관리' 는 충청도민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하여 관련 시책 추진상 용어 사용에서 혼선 방지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짐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본 조항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도민의 건강권 보장 및 실현을 위해 도민 건강요구 파악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도민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함
- 특히, 제2항에서 ‘도민의 건강요구 파악을 통해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보건의료인프라의 시·군 간 격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 및 건강권 소외에 대한 인식 등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차원의 노력을 강조한 내용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됨

○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모든 도민이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동등하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 특히, 도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도의 건강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도 명확히 함

이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계획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기회 보장’에 따라 일반 국민의 건강정책 의견 수렴 및 주도적 역할 부여가 건강증진정책의 최종 목표인 ‘건강수명 연장·건강형평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충청북도의 건강증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권리 및 의무 조항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심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 (안 제6조 ~ 제7조)

-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 도민건강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

전략 ▲ 성별·연령별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및 건강 실태 조사, 대책 ▲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 대책 ▲ 지역사회 주민 참여 및 활동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 사항 등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음

- 특히,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령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정책 방향과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마련하도록 한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을 함께 포함해 보다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
 - 이와 함께, 안 제7조에서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주민을 비롯해 지역의 의료보건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역량이 인정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도민 건강증진 정책의 효율성과 연계성 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도민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민 건강요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건강증진 관련 통계·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내 시·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도민 건강과 관련된 사업 추진을 위해 관 내 의료기관 및 인접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했고,

- 안 제10조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관리 상태 및 건강요구를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민건강관리 및 증진 관련 정책과 건강환경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중요한 건강 정책 수립·시행 시 도민과 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에서 국민의 권리·의무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의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민이 충청북도 건강정책 수립 및 시행의 주체인 점을 고려할 때 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명시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북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의무와 충청북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본 조례안은 그 목적과 추진 사업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안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충청북도민의 권리 및 의무와 충청북도의 책임을 정하고 충청북도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를 포함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권을 말한다.
3. “도민건강관리”라 함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등) ①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도민은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도민은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등 도민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민건강 발전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2. 성별·연령별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3. 성별·연령별 도민 건강 실태조사와 대책
4.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 대책
5.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주민 참여 및 활동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

른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심의)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된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료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도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건강 통계·정보 관리)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관리 상태와 건강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필요

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와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도지사는 도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시행 시에는 생애주기별 도민과 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18.>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 4의2.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 9. 27.]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②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 ⑧ (생략)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이하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9. 1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③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 11.>

1.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2.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5.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민건강관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도민건강관리와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8조(재정지원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現) 건강증진 관련 지원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 사업
- 저소득층 건강 지원사업(금연치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심뇌혈관질환, 아토피·천식)
- 국가건강검진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 모자보건사업 등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운영비	141,948,345	28,389,669	28,389,669	28,389,669	28,389,669	28,389,669

다. 재원조달방안

- 국고보조금(보건복지부 등) 및 자체재원 매칭을 통한 지원
- 도비, 시군비 매칭을 통한 지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9,792,339	9,792,339	9,792,339	9,792,339	9,792,339	48,961,695
국비 (건강증진사업 관리)	2,763,757	2,763,757	2,763,757	2,763,757	2,763,757	13,818,785
국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및 운영비 지원)	338,656	338,656	338,656	338,656	338,656	1,693,280
국비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인건비))	143,000	143,000	143,000	143,000	143,000	715,000
국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11,460	11,460	11,460	11,460	11,460	57,300
국비 (방문건강관리사업)	1,818,429	1,818,429	1,818,429	1,818,429	1,818,429	9,092,145
국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479,590	1,479,590	1,479,590	1,479,590	1,479,590	7,397,950
국비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86,960	86,960	86,960	86,960	86,960	434,800
국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239,000	239,000	239,000	239,000	239,000	1,195,000
국비 (모자보건사업)	537,700	537,700	537,700	537,700	537,700	2,688,500
국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585,000	1,585,000	1,585,000	1,585,000	1,585,000	7,925,000
국비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259,091	259,091	259,091	259,091	259,091	1,295,455
국비 (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34,706	34,706	34,706	34,706	34,706	173,530
국비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19,530	19,530	19,530	19,530	19,530	97,650
국비 (지역사회건강조사)	475,460	475,460	475,460	475,460	475,460	2,377,300
세 출	28,389,669	28,389,669	28,389,669	28,389,669	28,389,669	141,948,345
건강증진사업 관리 (국비50, 도비11, 시군비39)	5,527,514	5,527,514	5,527,514	5,527,514	5,527,514	27,637,57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및 운영비 지원 (국비50, 도비50)	677,312	677,312	677,312	677,312	677,312	3,386,560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인건비)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286,000	286,000	286,000	286,000	286,000	1,430,000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22,920	22,920	22,920	22,920	22,920	114,600

발굴 역량강화 (국비50, 시군비50)							
방문건강관리사업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3,636,858	3,636,858	3,636,858	3,636,858	3,636,858	18,184,29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비50, 도비11,시군비39)		2,959,180	2,959,180	2,959,180	2,959,180	2,959,180	14,795,900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국비50, 시군비50)		124,230	124,230	124,230	124,230	124,230	621,150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국비50, 도비25, 시군비25)		478,000	478,000	478,000	478,000	478,000	2,390,0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도비75, 시군비25)		3,800,000	3,800,000	3,800,000	3,800,000	3,800,000	19,000,000
모자보건사업 (국비50, 도비25, 시군비25)		1,075,400	1,075,400	1,075,400	1,075,400	1,075,400	5,377,000
저소득층 기저과 조제분유 지원 (국비50, 도비25, 시군비25)		3,170,000	3,170,000	3,170,000	3,170,000	3,170,000	15,850,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도비71, 시군비29)		5,249,000	5,249,000	5,249,000	5,249,000	5,249,000	26,245,000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국비80, 도비6, 시군비14)		323,863	323,863	323,863	323,863	323,863	1,619,315
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국비50, 도비50)		69,412	69,412	69,412	69,412	69,412	347,060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국비50, 시군비50)		39,060	39,060	39,060	39,060	39,060	195,300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비50, 시군비50)		950,920	950,920	950,920	950,920	950,920	4,754,600
재원 조달		28,389,669	28,389,669	28,389,669	28,389,669	28,389,669	141,948,345
의존 재원	소 계	9,792,339	9,792,339	9,792,339	9,792,339	9,792,339	48,961,695
	보조금	9,792,339	9,792,339	9,792,339	9,792,339	9,792,339	48,961,69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527,592	9,527,592	9,527,592	9,527,592	9,527,592	47,637,960
	지방세	9,527,592	9,527,592	9,527,592	9,527,592	9,527,592	47,637,960
	세외수입						
시군비		9,069,738	9,069,738	9,069,738	9,069,738	9,069,738	45,348,690